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1 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박 정·박지원·김현정

어기구・홍기원・문금주

임오경 · 송옥주 · 소병훈

조 국 ·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재예 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(생 략)	전용주차구역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	②
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	
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	
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	
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
	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
	하여야 하고, 「장애인차별금지
	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
	림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